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
----------	--------

발의년월일	2005. 5.
발 의 자	신주범 의원외

1. 개정이유

-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의 지정확대를 위하여 추천권 자를 군청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확대하고
- 대상자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원회를 대신하여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는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거창군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시키고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규정함(안 제2조)
- 수여대상 추천권자는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군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외국 귀빈등에 대하여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4조)
-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군민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토록 규정함.
(안 제5조)
-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는 혜택과 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각종 행사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기회를 부여함(안 제6조)
-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거창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거창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거창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
 3. 10인 이상의 군민
 4.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
-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거창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